

의안번호	2202486
의 퇴 인	서영교의원
회 답 일	2024.10.23.
추계번호	24D238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고, 장제보조비로 참전명예수당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2026~2030년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5,975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398	782	1,150	1,503	1,843	5,676	1,135
장제보조비 인상	62	61	60	59	58	299	60
합계	461	842	1,209	1,562	1,900	5,975	1,195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8항 (참전명예수당) 신설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함. 이 경우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묘지에의 안장)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에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제4항)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8항 (참전명예수당) 신설	0	—
2	안 제9조(묘지에의 안장)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관련 자료의 부재로 무공수훈자 유배유자율을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법 시행 이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 승계(안 제6조제8항)

(1) 대상자 수

-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2023년 연말 기준 13만 2,479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7% 감소

[표 2]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감률
지급인원(명)	190,329	173,733	161,577	146,932	132,479	-8.7

자료: 국가보훈부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8.7%를 적용하여 2026~2030년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증감률
지급인원(명)	100,955	92,212	84,227	76,933	70,270	-8.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승계 배우자 인원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가 감소한 만큼 참전유공자 사망자 수로 가정하고, 사망자 수에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신규 미망인 수를 추정
- 전년도 미망인 수 누계에 배우자사망률을 적용하고 신규 미망인 수를 더하여 당해연도 미망인 수 누계를 추정
 - 참전유공자 유배우자율은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1%, 배우자의 사망률은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8.1%를 적용함

[표 4] 참전명예수당 수급 배우자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배우자 승계	2026	2027	2028	2029	2030
전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100,955	92,212	84,227	76,933	70,270
추정 사망자 수	9,572	8,743	7,986	7,294	6,662
신규 미망인 수	6,901	6,304	5,758	5,259	4,804
미망인 누계	6,901	12,646	17,379	21,231	24,31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5]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월 지급액	300	320	340	350	390	420	7.0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0%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6]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 2026~2030년

(단위: 천원,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증감률
월 지급액	481	515	551	590	632	7.0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경우, 2026~2030년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5,676억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천원,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배우자 수(명)	6,901	12,646	17,379	21,231	24,314	—
지급단가(천원/월)	481	515	551	590	632	—
추가재정소요(억원)	398	782	1,150	1,503	1,843	5,676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장제보조비 인상(안 제9조)

(1) 지급대상

- 현재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장제보조비로 참전명예수당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표 8]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천원,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지급인원	5,292	2,875	3,538	3,032	2,814	7.0
지급단가	200	200	200	200	200	
총지급액	1,058	575	708	606	563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참전유공자 사망자 중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평균 24.1%임

[표 9]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 추이: 2019~2023년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참전유공자 수	190,329	173,733	161,577	146,932	132,479	—
참전유공자 사망자 수(A)	15,567	16,596	12,156	14,645	14,453	—
장제보조비 지급자 수(B)	5,292	2,875	3,538	3,032	2,814	—
장제보조비 지급 비율(B/A)	34.0	17.3	29.1	20.7	19.5	24.1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참전유공자 사망자 중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은 비율을 평균 24.1%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중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수를 추정

[표 10]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참전유공자 수	100,955	92,212	84,227	76,933	70,270	—
참전유공자 사망자 수(A)	9,572	8,743	7,986	7,294	6,662	—
장제보조비 지급자 수(B)	2,309	2,109	1,926	1,759	1,607	—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2) 지급단가

- 개정안에 따른 장제비 지급단가는 최근 5년간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 인상률 7.0%를 적용하여 추정한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의 6개월치로 산정

[표 11]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단가 추정:2026~2030년

(단위: 천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현재 지급단가(A)	200	200	200	200	200
개정안 지급단가(B)	2,887	3,090	3,308	3,540	3,789
추가 지급단가(B-A)	2,687	2,890	3,108	3,340	3,589

자료: 국가보훈부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제비 지급단가를 인상할 경우, 2026~2030년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299억 2,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급대상(명)	2,309	2,109	1,926	1,759	1,607	9,710
추가지급단가(천원)	2,687	2,890	3,108	3,340	3,589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6,203	6,094	5,985	5,876	5,768	29,927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고, 장제보조비로 참전명예수당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2026~2030년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5,975억원으로 추계됨

[표 1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참전유공자 유배우자 승계	398	782	1,150	1,503	1,843	5,676	1,135
장제보조비 인상	62	61	60	59	58	299	60
합계	461	842	1,209	1,562	1,900	5,975	1,195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참전유공자 유배우자 현황 자료의 부재로 인해 무공수훈자 유배우자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장제보조비 수급자수는 최근 5년간 참전유공자 사망자 중 장제보조비 수급자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참전유공자 유배우자 비율 및 장제보조비 수급자 수에 따라 추계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